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6 부

판 결

사 건 2019구합71998 재산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학교법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20. 3. 6.

판 결 선 고 2020. 5. 29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12. 10. B고등학교에 대하여 한, 별지1 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19,175,170원, 재산세 도시지역분 5,510,690원, 지방교육세 3,835,030원의 각 부과처분, [redacted]구 C 지상 건물 목조 와즙지붕 1층 교육연구시설 25.29㎡에 관한 재산세 3,050원, 재산세 도시지역분 1,710원, 지방교육세 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청 구 취 지[1)]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1945. 4. 10. [redacted]구 D동(이하 'D동'이라고만 한다) E 일대에 B고등학교를 설치·운영해 오다가, 2017. 3. 2. 위 학교를 [redacted]구 F로 이전하고(교명을 G고등학교로 변경), H, I, J, K, C 총 1206.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및 C 지상 건물 목조 와즙지붕 1층 교육연구시설 25.29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하고,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제외한 기존 학교부지를 [redacted]특별시(이하 [redacted]시'라 한다)에 매각하였다. B고등학교 학교부지의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.

(단위: ㎡)

최초 토지		토지분할 (2006. 10. 30.)		토지분할 (2017. 2. 17.)			비고(소유권) (2017. 3. 2)
지 번	면 적	지 번	면 적	지 번	지목	면 적	
E	13,839.5	L	979.6	L	학교용지	979.6	[redacted]시 매각
		E	12,859.9	E	학교용지	11,874.8	
				C	학교용지	985.1	원고 소유
H	44.0	H	44.0	H	대지	44.0	
I	47.3	I	47.3	I	대지	47.3	

1) 갑 제10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J	68.4	J	68.4	J	대지	68.4	
K	61.8	K	61.8	K	대지	61.8	

나.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, 2018. 12. 10. 'B고등학교'를 납세의무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재산세 19,175,170원, 재산세 도시지역분 5,510,690원, 지방교육세 3,835,030원 합계 28,520,890원,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7년 재산세 3,050원, 재산세 도시지역분 1,710원, 지방교육세 610원을 각 부과·고지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통칭한다)하였다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10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1) 절차상 하자

가) 원고가 아닌,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'B고등학교'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.

나) 이 사건 처분 고지서에 과세귀속연도, 과세표준액, 구체적인 부과근거규정, 세율 및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.

다)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2) 실체상 하자

이 사건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일 뿐 아니라,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B고등학교 역사박물관을 조성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전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 다만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[redacted]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출입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을 뿐이다.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,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유추적용되어 재산세, 재산세 도시지역분, 지방교육세가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2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납세고지서상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의 절차적 하자 유무

(1) 관련 법리

구 지방세기본법(2017. 7. 26.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항 제15호 등에 의하면,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,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, 세율, 세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,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,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,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 위 규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두36652 판결 참조). 한편,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,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,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,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(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).

(2) 구체적 판단

(가) 갑 제10,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처분 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세목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고, 동봉된 과세내역서에는 과세연도, 과세표준, 세율, 세액 및 그 계산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나,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위법이 있다.

(나) 피고가 2019. 1. 14. 발송한 독촉고지서에 '지방세 미납시 불이익'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이어서,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위 흠결이 보완·치유될 수 없다.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와 구두로 과세의 근거, 산출세액, 향후 과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협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미비의 절차상 하자가 보완·치유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소결론

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여,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별지1

이 사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내역

(단위: ㎡, 원)

지번	지목	면적 (A)	개별공시지가 (B)	과세구분	과세표준액 (A×B×70%)
H	대지	44.00	3,982,000	종합합산	3,850,918,666
I	대지	47.30	3,982,000	종합합산	
J	대지	68.40	3,870,000	종합합산	
K	대지	61.80	4,024,000	종합합산	
C	학교용지	959.81	4,818,000	종합합산	
		25.29		별도합산	85,293,054
합계		**1,206.60**			

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16

별지2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(2017. 12. 26.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41조(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)

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등"이라 한다)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2.31, 2016.12.27>

1.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. 다만,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1.1, 2015.12.29>

■ 구 지방세기본법(2017. 7. 26.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5. "납세고지서"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, 세율, 세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. 끝.